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554

발의연월일: 2022. 7. 20.

발 의 자:윤준병·김철민·민형배

한병도 · 양정숙 · 김수흥

양이원영 · 오영환 · 안규백

김정호 · 기동민 · 이수진(11)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함)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①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규정은 임의규정·선택규정이므로 위의 해당 요 건에 부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미곡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미곡의 가격하락이 예상되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요 구되는 상황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 이 계속 제기되어왔고, 그만큼 양곡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 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미곡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 기반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곡의 매입 가격은제5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초과생산량과 미곡 가격의 수준, 미곡 가격의 변화 추이, 민간의 미곡재고량 및 향후 미곡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수있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 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 다)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곡의 매입 가격은 제5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 라 초과생산량과 미곡 가격의 수준, 미곡 가격의 변화 추이, 민간의 미곡 재고량 및 향후 미곡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 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 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 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

	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
	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
	<u>되는 경우</u>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